

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(2차)계약서

본 자산관리위탁계약 변경(2차)계약서(이하 “본 계약”)는 2021년 [9]월 [9]일(이하 “본 계약일”)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다.

- (1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에 본점을 둔 **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**(이하 “갑”)
- (2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에 본점을 둔 **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** (이하 “을”)

전 문

갑과 을은 2018년 7월 6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갑이 보유하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, 을은 이를 수탁하는 내용의 자산관리위탁계약서(이하 “최초 위탁계약(서)”)를 체결하였고, 2018년 8월 30일 최초 위탁계약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의 자산관리위탁변경계약서{이하 “1차 변경계약(서)”}라 하고, 최초 위탁계약과 총칭하여 이하 “본건 위탁계약(서)”}를 체결하였다.

갑과 을은 본건 위탁계약서의 일부 사항을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다 음

제 1 조 (정 의)

본 계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이상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본건 위탁계약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.

제 2 조 (본건 위탁계약서의 변경)

- ① 본건 위탁계약서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, 본건 위탁계약서 별지 1. 수수료 중 “2. 자산관리수수료”와 관련하여 갑은 갑의 제7기 및 제8기 사업연도 기간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로서 금 49,891,300원(이하 “최종 자산관리수수료”)을 2021년 [9]월 [10]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. 명확히 하면, 최종 자산관리수수료는 갑이 제8기 사업연도 내에 청산하는 경우 추가 정산되지 아니한다.
- ② 본건 위탁계약서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, 본건 위탁계약서 별지 1. 수수료 중 “4. 매각성과수수료”와 관련하여 갑은 부동산 거래완료일 후 을이 “매각성과수수료”를 청구한 날로부터 90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한다. 단, “추가성과보수기준” 초과분에 대한 추가 지급 수수료는 잠정금액으로 부동산 거래완료일 후 을이 청구하며 청구한 날로부터 9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있는 경우

차후 정산하기로 한다.

제 3 조 (효력의 발생 등)

- ① 본 계약은 본 계약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- ② 본 계약은 본건 위탁계약서와 단일한 문서를 구성하며,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본건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, 본 계약과 본건 위탁계약서 사이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.

(다음 기명날인 또는 서명 페이지를 위하여 이하 여백)



위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.

갑: 주식회사 하나트러스트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

대표이사 박 영 희



을: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 15층(역삼동,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)

대표이사 이 창 희

